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. 10. 20 선고 2022가단10492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배아영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9. 29.

판 결 선 고 2022. 10. 20.

주 문

1. 피고와 C(D생)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7 지분에 관하여 2022. 3. 7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C(D생)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2 ‘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’ 기재와 같다.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 정하경

별지